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상향규정 등 〉
■ 신동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21호)

2024.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전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상향규정 등(안 제21조2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신동욱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8. 30.

다. 회 부 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를 정할 수 있고, 심의 대상 정보와 시정요구의 구체적 유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타인을 비방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와 보복성 폭로 콘텐츠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정보의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이러한 정보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정요구 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정보의 범위, 시정요구의 유형과 시정요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시정요구 제도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상향규정 등(안 제21조2 신설 등)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 정보의 범위, 시정요구의 유형 및 시정요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¹⁾(이하 “통신심의규정”)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①방심위의 직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²⁾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②현행법 제25조(제재조치 등)에 포함되어 있는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을 제재조치 규정과 별도로 규정하며, ③“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④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 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 -----.

1) 방심위규칙.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4.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신설>	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신설>	제21조의2(시정요구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제21조제4호에 따른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요구에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

현행	개정안
	<u>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u> <u>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u> <u>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u> <u>3.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 판결 등에 따라 시정요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시정요구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u>4.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u> <u>③ 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u>

현행	개정안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삭 제>
3.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 판결 등에 따라 시정요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시정요구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4.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삭 제>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삭 제>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 설>	1.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신 설>	2.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한 자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1조³⁾는 각 호에서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정하고 있고, 제25조⁴⁾는

-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 및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3.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시정요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시정요구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장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절차로 의견진술(제25조제2항), 자료제출요구(제25조제4항), 행정심판등의 제기(제25조제6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법 시행령 및 통신심의규정에 있는 법 제21조제4호의 심의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구분	개정안	현행법·시행령 ·통신심의규정	비고
심의대상 정보의 범위	안 제21조제4호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21조제4호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⑦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방송사업자등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방통위법 시행령 별표(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경우 과태료 금액은 700만원임.

구분	개정안	현행법·시행령 ·통신심의규정	비고
시정요구 유형	안 제21조의2제1항 ① 심의위원회는 제21조제4호에 따른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요구에 필요한 조치	시행령 제8조제2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정보 등)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신심의규정제15조제1항 제15조(시정요구) ① 위원회는 제12조제2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4호 및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행법 시행령에는 시정요구의 유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1조의2제1항은 통신심의규정과 유사하게 시정요구 할 수 있음을 본문에서 명시하고, 각 호에서 시정요구 유형을 규정
시정요구 절차 (의견진술)	안 제21조의2제2항	현행법 제25조제2항	○ 안 제25조제2항 관련 부분 삭제
행정심판 청구 등	안 제21조의2제3항	현행법 제25조제6항	○ 안 제25조제6항 삭제

구분	개정안	현행법·시행령 ·통신심의규정	비고
시정요구 절차 (조치결과 통보)	안 제21조의2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제3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정보 등)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8조 제3항 상향 규정
자료제출 요구	안 제21조의2제5항 ⑤ 심의위원장은 제21조제4항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 제25조제4항 ④ 심의위원장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현행법에는 방송사업자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포함)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규정되어 있고,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게시판 관리·운영자를 추가함.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등 통보절차	안 제21조의2제6항 ⑥ 심의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7항 ⑦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를 방송사업자등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현행법에는 방송사업자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포함)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통보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고,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게시판 관리·운영자를 추가함.

구분	개정안	현행법·시행령 ·통신심의규정	비고
과태료	안 제30조제1항(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한 자	신설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한 방송사업자등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⁵⁾	○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설. ○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추가되는 것임.

- 개정안은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타인을 비방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와 보복성 폭로 콘텐츠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정보의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이러한 정보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어 방심위의 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심위의 심의 대상 정보의 범위, 시정요구의 유형 및 시정요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시정요구 제도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 심의대상의 위임근거를 삭제하고
상향입법하는 안 제21조제4호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발생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정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한
심의제도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입장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 시정요구 유형, 사업자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의무 상향입법, 방심위 시정요구 시 의견진술 및 불복
절차 고지 규정 이동,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도 자료제출 의무
(이하 안 제21조의2 신설)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안 제30조제1항)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임.
- 방심위 역시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방심위는 방송
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프로그램과 정보통신망상의 정보를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현행법에서 방송 및 통신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여 적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방심위의 심의대상 정보의
범위, 시정요구 유형 등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별도조항(안
제21조의2)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법체계적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입장임.
- 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시정요구의
내용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 제21조
의2제1항제4호는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고, 개정안 제21조의2제5항에 대해서는 심의 및 시정요구에

관해 실질적으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임.

○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25조제4항 및 제7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불복시 위원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정하고 있어, 안 제21조의2제5항 및 제6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중복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삭제하고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해서만 규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은 제25조제4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1조의2제1항에서 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약칭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21조제4호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시행령에 규정된 “등”을 삭제하여 방심위의 심의대상 정보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54)」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와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 정보의 범위, 시정요구의 유형 및 시정요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시정요구 제도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와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정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한 심의제도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방통위의 신중검토 입장, 법체계적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심위의 신중검토 입장 및

현행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 필요성과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54)」과의 병합심사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226